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

(2016. 10.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9일(수)
- 제 출 자 : 신종갑 의원 외 7명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목)

## 4. 관계법규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이유 >

국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국기 게양대 설치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민들의 국기에 대한 애국정신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同)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9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국기 게양대 설치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마포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구청장의 책무,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사업 지원,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및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10.20.~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에서 정하는 “마포구민의 날”을 매년 10월 23일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제8조(국기 게양일)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을 지자체에서 국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외 11개 광역시, 대전 유성구외 30개 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은 서울시와 영등포구, 노원구가 국기게양일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에서는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민족정신을 나타내고 있어 국기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국경일 등 국기 게양일에 가로기 및 태극기 게양 시 훼손된 국기 게양을  
지양하고 깨끗한 국기를 게양 할 수 있도록 국기 게양 교육·홍보 및 예산편  
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